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7. 14 선고 2020가합12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렬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주헌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8. 3. 8.자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3. 12. 접수 제1861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18. 2. 9.에 1억 5,000만 원, 2018. 2. 16.에 1억 2,000만 원을 C이 실질적으로 시행 및 분양하는 상가인 D건물에 자금을 투자하고 그 운용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과 일자불상경 D건물 E호를 1억 7,000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6. 1억 원, 2017. 2. 6. 1,000만 원, 2017. 2. 9. 6,000만 원, 2018. 6. 25. 1,000만 원, 2018. 6. 29. 9,000만 원 등 합계 2억 7,000만 원을 C 측에게 지급하였다.

다. C은 2018. 3. 8. 피고(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를 C, 수탁자를 피고, 공동우선수익자를 G조합 및 H조합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3. 12. 접수 제18613호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으로부터 상가건축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기망을 당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2,000만 원을 편취당하였으므로, C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 소멸시키는 신탁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사해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G조합과 H조합은 금융기관으로서 정상적인 대출 절차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 선의의 수익자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여러 명의 수익자 중 일부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제1항 본문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하더라도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선의인 경우에는 수탁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나. 위 법리에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G조합 및 H조합으로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G조합 및 H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C과는 이 사건 신탁계약과 함께 이루어진 대출거래 외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G조합 및 H조합의 C에 대한 대출 관련 자료상으로도 C이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신용이나 재정 악화 등으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내용이 없다.

③ G조합 및 H조합은 C에 대한 대출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그 담보가치를 확인하고, 위 감정평가 결과 감정평가액은 합계 114억 원에 이르는 반면, G조합 및

H조합의 대출금은 각 48억 원과 7억 원에 불과하여 G조합 및 H조합과 C의 대출 거래가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그러한 상황에서 G조합 및 H조합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로 인한 담보 상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C에게 대출을 실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현영, 판사 최리니, 판사 김은수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3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3층 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56.4803㎡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17.0193 끝.

2.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3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3층 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98.8642㎡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29.7909 끝.

3.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3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3층 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113.52㎡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34.2071 끝.

4.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3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3층 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110.94㎡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33.4297 끝.

5.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3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3층 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99.33㎡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29.9312 끝.

6.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3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3층 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107.07㎡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32.2636 끝.

7.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3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3층 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215.617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64.9723 끝.

8.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4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4층 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41.846㎡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12.6095 끝.

9.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4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4층 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180.7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54.4657 끝.

10.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4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4층 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113.4001㎡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34.1710 끝.

11.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4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4층 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289.6559㎡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87.2824 끝.

12.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4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4층 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180.686㎡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54.4464 끝.

13.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5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5층 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119.16㎡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35.9067 끝.

14.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5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5층 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816.817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246.1327 끝.

15.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6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6층 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391.7㎡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118.0315 끝.

16.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6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6층 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73.54㎡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22.1599 끝.

- 이 상 -

